오리건 주 순회법원
_____ 카운티

_____

☐ 신청인 또는 ☐ 신청인-미성년 아동의 부모/후견인

☐ _____

(성명을 사용할 것) *(보호 받는 미성년 아동의 이름)*

대.

_____

피 신청인 *(접근금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)*

사건 번호. _____

총기에 관한 판정 및 피 신청인에 대한 통고

(성학대 보호명령 – 미성년 아동 신청인)

ORS

본 건은 20____년 _____ 일 법정에 제기되었음. 보호 명령은 청문회 후 명령에 규정된 대로 연장 됨.

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:

A. **<u>관계</u>: 이 명령에 따라 보호 받는 사람** *(최소 1 개 항목에 표시할 것)*:

- ☐ **피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.**
- ☐ **피 신청인의 자녀의 부/모**.
- ☐ **피 신청인과 동거 (성 관계를 하며)하거나 또는 했던 사람.**
- ☐ **피 신청인의 자녀**.
- ☐ **피 신청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파트너*의 자녀** (***성관계를 가지는*** 파트너는 배우자/전 배우자, 동거인/전 동거인, 또는 피 신청인의 자녀의부/모 임).

☐ **B. <u>통지 및 참여 기회</u> :**

피 신청인이 실제로 통지를 받았으며 또한 피 신청인이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청문회가 있은 후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

☐ **C. <u>명령의 조건</u>:**

이 명령은 피 신청인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나 피 신청인의 자녀(들)을 괴롭히거나, 스토킹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게 제지하고,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나 피 신청인의 자녀(들)이 신체적인 상해를 당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다른 행위들을 못하게 제지합니다. **그리고**

피 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나 피 신청인의 자녀(들)의 신체적 안전에 실제적인 위협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.

42 USC § 3796gg-(4)(e) 조항에 의한 총기에 관한 통지: 이 명령의 결과로, **연방 법** 18 USC § 922 (g)(8) 에 따라 피 신청인이 **총기 또는 탄약**을 소지, 수령, 발송, 운송 또는 매입하는 것은 불법적일 **수 있습니다**. 이 명령은 또한 피 신청인이 미 합중국의 군대에서 복무를 하거나 법 시행기관에 취업하는 데 지장을 **줄 수 있습니다**. [OJIN Event Code: **NOGR**]

☐ **연방 총기 판결 (브레디):** 이 명령에 따라 피 신청인이 이 명령의 유효기간 중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, 수령, 발송, 운송 또는 매입할 경우 연방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. [OJIN Event Code: **ORBY**; LEDS Brady Code: **Y**]

피 신청인에게 알림: 당신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매입하면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불법이 되는지 또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 당신이 군복무를 하거나 법 시행 기관에 취업하는 데 지장을 받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.

날짜: _____

_____
판사 서명

_____
판사의 이름을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하십시오